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44
----------	------

발의연월일 : 2023. 8. 25.

발의의원 : 신달호 의원, 최재규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에 따라 권역별로 여단 단위로 예비군 훈련장이 통합·운영되면서 대구 지역예비군대원은 동구 능성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받게 됨. 이에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장에게 달성군 지역예비군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관내 지역예비군대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예비군법」 제6조의2에 따라 소집통지를 받은 예비군이 입소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곳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량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비군법(법률)」 (2022.12.13. 일부개정, 2023.6.14. 시행)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④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의 훈련 연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정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나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대주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로서 소집통지서를 전달받는 자가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인 경우에는 소집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세대주등은 소집통지서를 지체 없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가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는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제14조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